

국제 안전보건 동향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Vol. 474

국제 안전보건 동향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소식지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Contents

국제 안전보건 동향



사고사망 재해예방

03 국제, 물류업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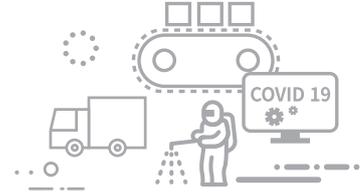


국외 산업안전보건 단신

16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지침
발표

18 영국, 대기오염과 안전보건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국제, 물류업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사례



저온창고 및 물류체계를 갖춘 국내 작업장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연쇄 감염 촉발에 따라 국외 물류업체 등의 코로나19 대응사례 등 조사¹⁾

조사 범위

- 저온창고 및 물류 체계를 보유한 국외업체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 식품가공시설, 물류창고 등의 코로나19 예방 평가도구 및 관련지침
- 저온창고 협의체 발간 사업장 관리를 위한 권고 사항

국외 물류업체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1. 🇺🇸 물류 및 유통업체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 아마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 지침 발표
 - 전 작업현장에서 발열 체크, 질병통제센터(CDC²⁾기준(섭씨 38도) 이상 발열 시 귀가 조치하고 열이 내린 상태로 3일 유지 시 업무 복귀
 - 조사일(5.31) 기준 약 10억 개의 마스크, 4,800만 개의 손 소독제, 3,400만 개의 장갑을 제공하고, 작업장 내 2,000여개 세면대 설치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폭증으로 10만 명 추가 고용*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3억 5천만 달러 추가 소요
- 아마존, 월마트 등 주요 물류업체 코로나19 대응 현황³⁾
 - 아마존은 전국 단위 직원 발병 현황을 제공하지 않음. 각 지사별 발병 현황만 소속 직원에게 공유하고 부서·동선 등 세부정보는 비공개
 - ※ 직원 및 13개 주(州) 검찰청, 노동조합 등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응
 - 스미스필드, 크로거, 도미노, 월그린, 코스트코 등 미국 내 타 물류업체도 감염자 정보 공개 여부 문의에 대해 무응답
 - ※ 코로나19로 인한 월마트 내 사망자는 약 22명으로 추정('20.5.31.기준)

1) 출처 : <https://www.cnet.com/news/amazons-details-on-covid-19-infections-arent-good-enough-workers-and-officials-say/>
<https://www.theverge.com/2020/6/3/21279740/amazon-sued-nyc-warehouse-workers-covid-19-coronavirus-safety-measures> 등

2) CDC, Center for Disease and Control

3) Newyork Times, ('20.5.31.)

- 각 물류 업체들은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작업자 거리두기, 방역 및 코로나19 검사, 개인방역용품 지급, 휴가 및 수당 지급 등 전략 수립
 - 매출 감소 등 사업의 위축 및 신규직원 등 채용 관련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추측

2. 창고업(warehouse) 관련 코로나19 대응 현황

- 영국 정부, 이동 제한령 해제 이후 대비 코로나19 지침 발표
 -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⁴), 안전보건청(HSE⁵) 및 공중보건청(PHE⁶)과 협력하여 업종별 코로나19 대응 지침 발표
 - 이동 제한령 해제 이후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 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외부 방문자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 ASOS사(社)의 물류창고 노동자 중 확진자 발생
 - 영국 사우스요크셔주 반즐리시(市) 소재 ASOS사⁷ 물류창고(4,000명)에서 9명의 확진자 발생, 영국 노동조합(GMB⁸)은 해당사의 관리 소홀에 대해 비판⁹
 - 영국노동조합은 노동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해당 물류창고가 코로나19에 대해 취약하다고 판단, ASOS사는 해당내용 부인(20.4.1)
 - ASOS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절반이 2주 이상 현장 부재 및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 격리 실시로 집단 감염 확률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

3. 업종별 코로나19 관리 지침 발표

- 정부 부처 유관기관, 코로나19 대비 업종별 지침 제작 및 배포
 - 일본 정부부처 유관기관에서 산업별 지침을 배포하고 있으며, 창고 및 물류 분야는 국토교통성과 해당 유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 일본창고협회, 일본냉장창고협회 등
 - 각 유관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지침을 배포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통근, 근무, 휴식, 업종별 주의 사항, 외부방문자, 감염대비 의식 향상 등의 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업종별 주의사항이 뚜렷하지 않음
 - 일본의 물류업체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4) 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Industrial Strategy

5)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6) PHE, Public Health England

7) 영국의 온라인 의류 판매 업체(의류 및 화장품)

8) 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약 63만 명 이상의 노동자로 이루어진 영국의 노동조합

9) BBC(20.5.13.)

식품가공시설·물류창고 등의 코로나19 예방 평가도구 및 관련지침

1. 미국 CDC, 육류 및 가금류 가공 시설(사업장) 평가 도구

● 평가도구(toolkit) 개요

- (정의) 안전보건 전문가 및 정부·지역 당국 종사자의 육류 및 가금류 가공 시설 평가를 위한 도구 및 자원
- (활용) 안전보건 전문가 및 보건관련 주정부·지방당국 공무원
- (목적) 육류 및 가금류 가공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종합적인 위험성 평가 및 통제 계획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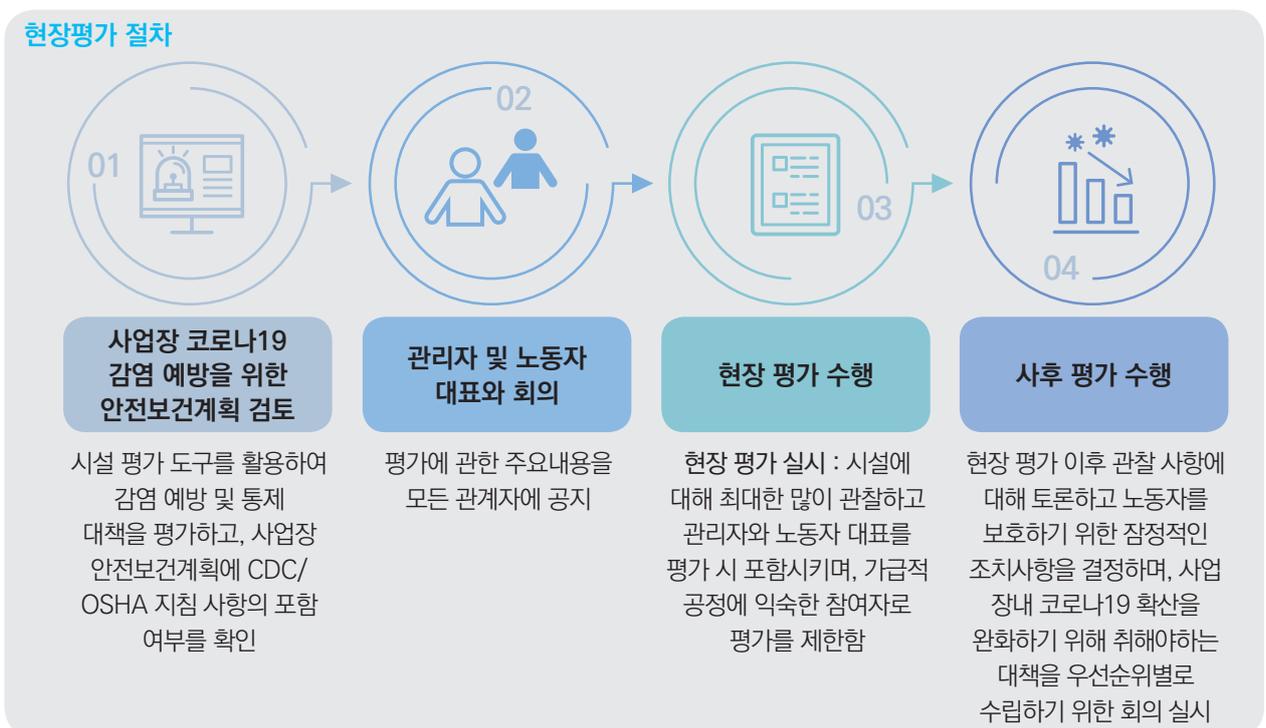
● 평가 종류

- (사전 평가) 평가의 목적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알리고, 평가자를 그룹으로 구성하여 체크리스트가 사업장에 적정한지 검토 실시
- (사업장 평가) 사업장에 대해 점검 방식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직접 평가를 실시. 작업 공정을 최대한 많이 관찰하고 가급적 특정 공정에 익숙한 참여자로 평가 제한
- (사후 평가) 사업장 평가 후 발견된 사항들을 토론하고 노동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우선순위 별로 수립

● 평가 착안사항

- 본 시설 평가 도구는 육류 및 가금류 가공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예방 대책을 평가하기 위함이며 법적 이행사항 평가는 아님
- 지역 상황에 따라 평가요소는 추가 또는 제거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아래 적시한 내용 외의 활동사항을 조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시설 관리자 및 노동자 대표와 토론
 - 현장 평가를 통한 직접 점검

● 평가 절차(권고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능력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능력

목표에 의해 구성된 활동사항	적정 (Yes)	부적정 (No)	조건부적정 (partial or alternative)	평가내용 (com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요시 물리적 거리두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약 1.82 미터(원문: 6피트) 이상의 거리가 유지된 작업환경 - 최소 1.82미터 이상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위치 조정 - 가급적 노동자가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 - 휴게실 책상 및 의자 최소 1.82미터 이상 거리 유지 - 대체 휴게 공간 여부 (예: 교육장, 회의실, 야외 휴게공간 등) - 최소 1.82미터 거리 유지 불가능시 칸막이 등 물리적 보호벽을 활용 - 휴게 공간(예: 식당, 휴게실, 기도실 등)에 칸막이 설치 - 노동자 출퇴근 시 최소 1.82미터 거리 유지 - 노동자가 탈의실, 휴게 공간, 흡연실 등을 이용할 때 최소 1.82미터 이상 거리 유지 - 가공 라인 현장에서 거리두기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는 노동자 지정 - 거리두기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장내 시각적인 표시 (바닥에 거리 유기를 위한 라인 표시 또는 적절한 언어로 된 표지판 설치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근 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잦은 결근 발생 시 사업장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 내 필요한 통제 이행계획 포함 - 체크리스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동자 및 관리자로부터 개선안 수렴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손 위생 증진

목표에 의해 구성된 활동사항	적정 (Yes)	부적정 (No)	조건부적정 (partial or alternative)	평가내용 (com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많은 공간에 최소 60%이상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 비치 (가급적 터치 프리)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 제공(손 씻기를 자주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터치 프리 출퇴근 기록계 사용(필요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손 씻기 위생, 기침/재채기 예절 교육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손 씻기를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추가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풀 제한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 탑승 전·후 손 씻기 장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풀 제한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 내 천 마스크 착용 장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풀 제한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 내 기침/재채기 예절 장려				

• 사업장 내 노동자 관리



사업장 내 아픈 노동자 확인 및 격리

목표에 의해 구성된 활동사항	적정(Yes)	부적정(No)	조건부적정 (partial or alternative)	평가내용 (com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에 출근 전 질병 발생 보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 내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검사 - 38.0°C 이상 출입 금지 -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자 출입 금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 등 의심 증상자를 위한 계획 - 자가격리 및 의료시설 방문 등 장려 - 직장 복귀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 노동자 개인정보보호를 바탕으로 인사, 보건관련 부서(가능시)에 통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사자(screeners)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고려사항 - 거리두기 증진을 위한 공학적 대책(칸막이 등) - 1.82미터 이내 거리인 경우 장갑, 가운, 안면보호구, 마스크 또는 호흡기 등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PPE) 착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에서 질병자 발생 시 계획 - 열을 동반한 증상자 발생 시 경영자에 통보 - 증상 발현 48시간 전부터 근접 접촉자 파악 - 유증상자를 다른 노동자와 격리하고 귀가 조치 - 유증상자의 작업장소, 도구, 탈의실 등을 소독 - 유증상자 개인 관리를 통한 보호방법 적용 (거리두기, 적절한 개인용보호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질병자가 사업장에 있지 않도록 병가 및 휴가 장려 - 출근에 기반을 두지 않은 보너스 제공 방식 - 증상이 있는 노동자 및 가구원에 의해 집에 머물게 되는 경우 처벌 금지 - 노동자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안내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증상자 및 노출노동자에 대한 직장 복귀 정책 - CDC 중요기본지침(Critical infrastructure guidance)에 추가적인 안전 예방법 제공으로 노동자가 무증상이 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주정부 및 지방 보건 부처와의 자문을 통해 정책 수립				

목표에 의해 구성된 활동사항	적정(Yes)	부적정(No)	조건부적정 (partial or alternative)	평가내용 (com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진자의 직장 복귀 정책 - 자택격리를 위한 CDC 잠정 지침(interim guidance)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주정부 및 지역 보건당국의 자문을 통한 정책 수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통보 계획 여부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 관리 - 주정부 및 지역보건 당국과 협업하여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자 파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코호트 방식을 고려한 시설 - 언제나 동일한 그룹의 노동자를 같은 교대시간에 같은 동료와 함께 투입하는 방식 - 점심 식사장소가 부서별로 정해져 있거나 시차를 둔 점심식사 시간 방식을 적용(시차 간에 식사장소 소독 실시), 식사 교대시간 사이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촉을 최소화 - 현장 산업보건 인력이 CDC/OSHA의 산업보건 및 응급조치 인력 지침을 준수				

• 교육, 훈련, 홍보 제공



교육, 훈련, 홍보 제공

목표에 의해 구성된 활동사항	적정(Yes)	부적정(No)	조건부적정 (partial or alternative)	평가내용 (com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훈련, 홍보가 노동자에게 적절한 언어로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노동자에게 제공 - 사업장내 노출 시 위험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노동자에게 제공 - 손으로 입, 코,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노동자에게 제공 - 손 씻기(위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노동자에게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플 때 집에서 쉬기, 기침/재채기 에티켓, 적합한 손 씻기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표지판을 사업장내 게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고려사항 - 거리두기 증진을 위한 공학적 대책(칸막이 등) - 1.82미터 이내 거리인 경우 장갑, 가운, 안면보호구, 마스크 또는 호흡기 등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PPE) 착용				

• 적절한 개인보호구 제공



적절한 개인보호구 제공				
목표에 의해 구성된 활동사항	적정(Yes)	부적정(No)	조건부적정 (partial or alternative)	평가내용 (com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주는 코로나19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결정하기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적합한 개인보호구 제공 - 소독을 강조한 정규 교육훈련을 포함한 개인보호구 프로그램 지속 - 개인보호구를 사용하기 전·후에 손 씻기 강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 마스크 사용의 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 - 사업주의 노동자에 천 마스크 제공 - 천 마스크의 적합한 착용, 세탁, 폐기를 보장하는 정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면 보호구 사용 고려 - 안면 보호구는 노동자의 안면부를 보호하고 유리부는 깨끗해야 함 - 안면 보호구는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해야 함 - 안면 보호구는 적절하게 사용되고 보관되어야 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주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을 고려(가능하다면 N95 마스크)				

• 평가 및 환기



평가 및 환기유지				
목표에 의해 구성된 활동사항	적정(Yes)	부적정(No)	조건부적정 (partial or alternative)	평가내용 (com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주는 난방, 환기 엔지니어에게 적합한 환기에 대하여 자문 고려(적용 가능 시) - 환기팬은 노동자 사이에 공기흐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함(적용 가능 시) - 개인 냉각팬은 제거(적용 가능 시) - 냉각팬 제거 시 사업주는 열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 사업주는 환기장치의 필터에 대한 적절한 유지와 살균을 보장해야 함(가급적 자외선)				

• 청소, 위생, 소독



청소, 위생, 소독

목표에 의해 구성된 활동사항	적정(Yes)	부적정(No)	조건부적정 (partial or alternative)	평가내용 (com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국 농무부(USDA ¹⁰) 지침 및 OSHA 청소·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규정에 적절한 청소 및 위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풀 이용 시 주로 접촉되는 표면을 청소 및 소독 (예 : 손잡이, 안전벨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구를 주로 사용하거나, 음식물과 접촉되는 표면의 경우 청소 및 위생 규약에 따라 시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빈도의 증가에 따른 소독 규약 - 주요 작업장에 대한 소독 규약 - 자주 접촉되는 표면에 대한 소독 규약 (예 : 수도꼭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손잡이, 포장기 터치패드) - 물리적 칸막이에 대한 소독 규약(칸막이 존재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절한 개인보호구 및 적합한 소독제를 사용 (미국 환경보호청 ¹¹ 'EPA' N 목록과 미국 농무부의 식품 제조 장소에 대한 규정 참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촉이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대 시간마다 자주 소독하며 (빈도수 체크), 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대시간 사이에 충분한 시간 적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산품은 적절한 접촉 시간동안 적절한 농도로 적용				

2. 영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안전하게 일하기(제조업 분야)

● 지침 개요

- (원문) Working safely during COVID-19 in factories, plants and warehouse
- (발간 주체)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및 공공보건청, 안전보건청
- (발간 목적) 노동자 및 사업주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근무하고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조업 (공장, 플랜트, 창고)에 적합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최신화 예정 <5.11 발간>
- (적용 범위) 사업주는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기존 법적 의무를 준수하되, 해당 지침을 비법률적 측면에서 활용
 - ※ 별도의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주요 내용

- 제조 및 화학공장, 식품 및 기타 대형가공 공장, 창고, 유통센터, 항공 등의 작업환경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

10)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11)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구분	주요 내용
<p>위험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및 표면청소 빈도 확대 - 재택근무 등 유연성 있는 출퇴근 등 위험성 평가 결과를 내부(임직원) 및 외부(웹사이트 등)에 공유
<p>취약계층 노동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임산부,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자가 격리가 필요한 사람(유증상자 및 유증상자와 거주하는 사람)이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나이,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
<p>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근무제를 통해 출퇴근 혼잡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차를 두는 출퇴근 시각 시행 건물 및 현장 내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건물 내 일방통행 도입, 엘리베이터 탑승자 줄이기 등 시행 테이프나 페인트를 활용하여 2m 이상 거리 두기 및 조를 편성하여 고정된 인원들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 작업 시 얼굴을 마주보지 않도록 측면 또는 후면으로 인원배치 대면 회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야외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회의 개최 등
<p>외부 방문객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을 가능한 제한하고, 필수적 방문일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 및 방문내역을 기록 방문객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고 위생 제공 개인 소독 및 위생관리를 하며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경로 조정
<p>작업 현장 청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가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재개할 때 청결을 유지하고, 환기시스템을 점검 손잡이, 펌프 핸들 등 정기적으로 사람이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자주 청소하고 폐기할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 손 씻기 및 개인위생을 권장하는 한편, 화장실, 탈의실 등 공동구역에 대해 청소 강화 물건을 상/하역 작업 시 공용장비 부품은 매 사용 후 세척을 하고, 세척 여건이 안 되는 물품/상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손 씻기를 더 자주할 수 있도록 장려
<p>개인용 보호구, 마스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는 기존 안전보건 위험과 다른 유형의 위험으로 기존 이상의 추가적 개인보호구는 유용하지 않음 개인보호구보다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조 편성 등으로 관리해야함 마스크는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마스크와 관련된 위생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마스크를 착용하며, 착용 전후로 손 세정제 사용 - 매일 마스크를 교체하며 세탁한다. 세탁이 불가능하면 폐기물에 주의하여 처리
<p>노동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 방식을 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며,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동일 인원으로 구성 후 팀을 고정화 불필요한 출장을 피하고 한 대의 차량으로 갈 경우에는 인원 최소화 및 출장 파트너를 따로 정하여 활동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지 및 관련 지침 참고 등
<p>제품 입고 및 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수거 및 배송 절차 중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대량으로 주문하여 배송 빈도를 줄이는 방법 고려 안전하고 가능할 시에는 1인이 차량에 적재 또는 하역 작업 실시하며 2인 이상 작업을 할 때에는 고정된 조가 작업

세계 저온 공급망 연합의 권고사항

● 개요

- (발간 주체) 세계 저온 공급망 연합(GCCA¹²⁾ 및 세계 식량물류기구 과학자문위¹³⁾
 - 온도 제어 물류와 관련된 주요 산업체 및 식품과학, 포장전문가 연합
- (발간 목적)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권고 사항 및 사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
 - 코로나19 확산(3월)에 협회 회원사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발행, 현재 10판으로 최신화 <'20.5.11 기준>
- (적용 범위) 협회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권고사항으로써, 각 국가(북미 중심)의 연방, 주(州) 등의 규정이 동 문서보다 우선함
 - (미국) 식품제조, 저온창고, 물류 등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종의 특성 상 농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FDA¹⁴⁾)의 지침 등을 우선 참조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¹⁵⁾)과 안전보건센터(CCOHS¹⁶⁾) 등이 협력하여 업계 및 소비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및 우선순위 등 설정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국립보건연구원(NIH¹⁷⁾) 등의 지침을 준용

● 주요 내용

- (공통 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반적 사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간한 제조업 사업장 관리지침 등에 따름
 - 사업장 내 거리두기 등 일반 사항

구분	세부 내용	지침 등 기준
직원 간 거리 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은 여러 곳에 방문하지 않고, 팀원들의 이동도 가급적 제한 • 입구 등 진입 지점이 붐비지 않도록, 교대근무 시작,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라커룸 등에서의 접촉 최소화 	미국 CDC
체온 측정 및 개인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간호프로그램, 클리닉, 병원 등의 의학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체온을 측정 • 근거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을 위해 마스크를 제공 	



12) Global Cold Chain Alliance
 13) World Food Logistics Organization's Scientific Advisory Council
 14)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5)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16)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17)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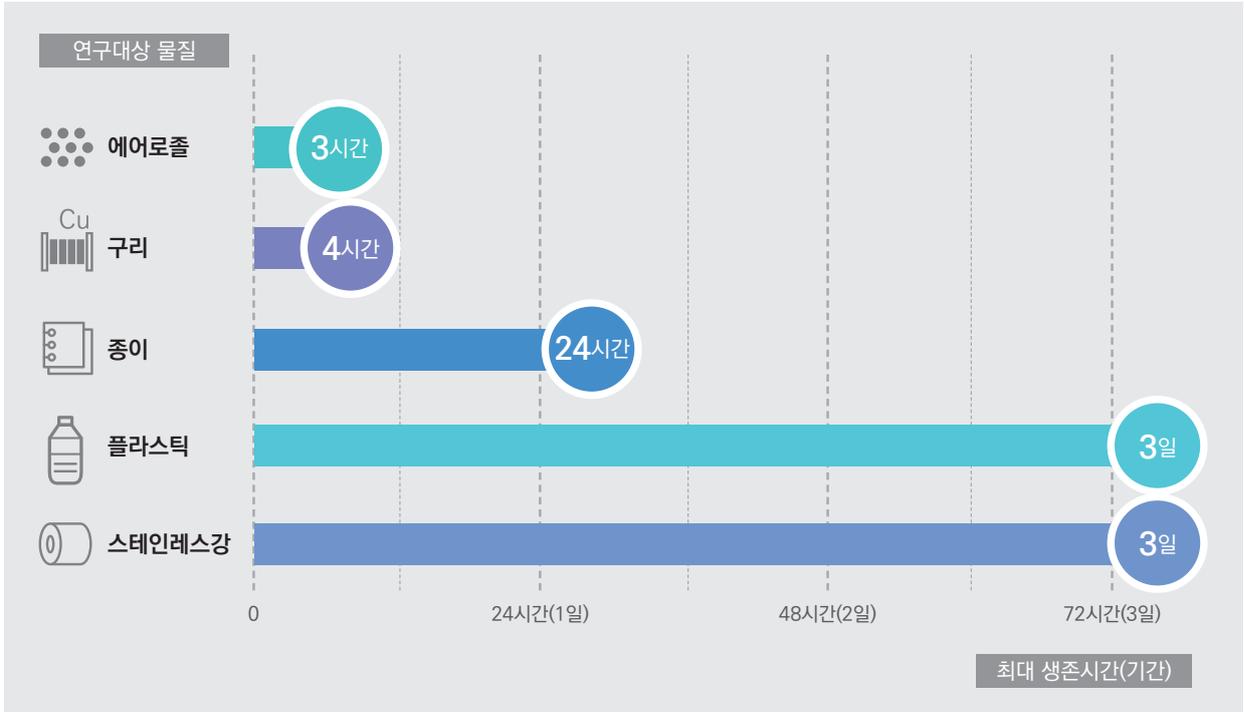
● **(특이 사항)** 식품 가공시설, 저온 창고 보유업체 등에 특화된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침 등 기준
기본 장비(시설)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 전) 장비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 (교대 후) 취급 장비(MHE)·지게차, 테이블, 손잡이, 전등 스위치, 조리대, 핸들, 책상, 전화, 키보드, 화장실, 수도꼭지, 제어판, 컴퓨터 화면 및 모니터 소독 	GCCA
시설 출입 및 접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를 포함한 방문객의 시설 출입 금지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에게 전용 욕실 제공(트레일러 대여) 및 소독 • 사무실과 접촉이 빈번한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손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세척할 수 있는 세면대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관리 	GCCA
소독 대상 및 용액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재킷, 장갑 및 모자 등 냉동 창고 작업복(gear)에 작업 전·후로 소독제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여 소독 • (예시) 냉동 창고 작업복(gear)에 5%의 표백제 용액을 도포하고 널어서 말림(hang out to air d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세정) 표백제 1/2 티스푼(2.45ml)에 1 갤런(3.8 리터)의 물로 50ppm 용액 제조 - (표면 세척) 1 테이블 스푼(14.8ml)의 표백제에 1 갤런(3.8 리터)의 물로 200ppm 용액 제조 	미국 EPA
오존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 옷의 박테리아로 소독을 위해 밀폐 가능한 용기에 옷을 넣고 오존으로 소독 	
서류작업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가 선하증권 등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방식 전환 및 새로운 방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비디오 제작 	
식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운전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간식 제공 • 드라이브 스루 식당의 목록을 작성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가능하면 화장실이 있는 식당을 추천 • 직원들이 사업체 외부로 이동할 경우를 제한하고, 현지 식품 소매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 포장된 도시락을 가능한 제공 	GCCA
물리적 거리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경영진을 상호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가급적 화상회의를 통한 브리핑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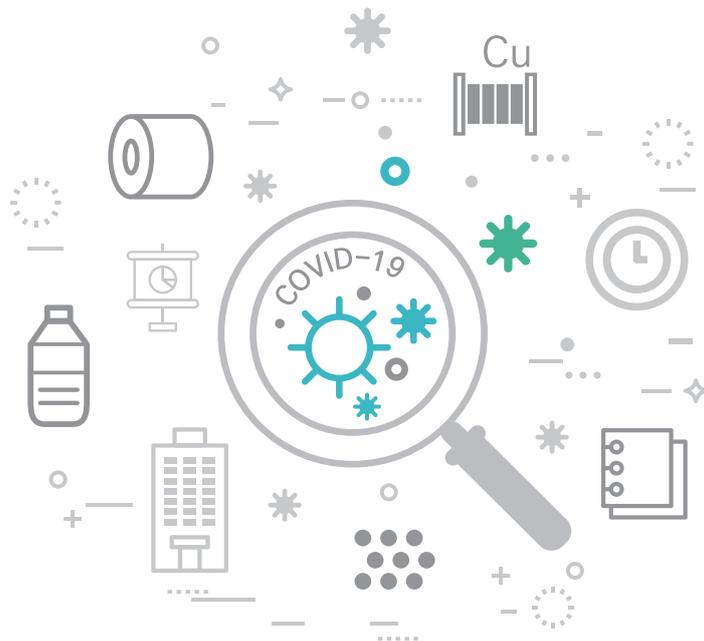
● **(관련 연구)** 저온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생존 기간

- 참여기관 :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질병통제예방센터, UCLA 및 프린스턴 대학교
- 연구대상 : 상온(Ambient temperature) 상태, 각 물질 표면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생존기간

• 측정결과



※ 저온상태의 COVID-19 생존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 비슷한 유형의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몇 년간 생존할 가능성 있음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지침 발표¹⁸⁾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 중 최소 164명 코로나 양성

- 온타리오주(州) 남동부에 위치한 심코¹⁹⁾ 마을에서는 31살의 멕시코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등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음
- 해당지역은 농장지대로 자국노동력의 부족으로 멕시코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기증상 등을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으나, 사업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으나 차후 캐나다에서 일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염려로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필요

- 옥수수, 수박 등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스코틀린 그룹²⁰⁾에서는 216명 외국인 노동자 중 164명이 양성으로 나오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
- 이에 스코틀린 그룹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침을 발간함

캐나다 정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주 대상 지침²¹⁾

- 캐나다 정부는 계절별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SAWP)과 같이 단기간 동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을 발간함
- 코로나19 대응자료와 더불어 해당 지침은 사업주의 역할과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닌 캐나다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관점을 같이 제공함
- 해당지침은 크게 노무, 노동자 관리, 사택 등 숙소제공 세 관점에 따라 나뉨

18) <https://www.cbc.ca/news/canada/london/migrant-workers-southwestern-ontario-covid-1.5594019>

19) Simcoe

20) Scotlynn Group

21)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employer-compliance/covid-guidance.html>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 주요내용

<p>노동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노동자가 캐나다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의무격리 기간 역시 포함됨. 이는 사업주가 노사 관계법 및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사업주는 격리기간동안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임금과 복지를 제공해야 함. 특히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당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일주일 최소 30시간어치를 지불해야 함 (단, 고용보험, 주택, 운송수단 등에 대해 계약 공제사항을 보류할 수 있음) • 사업주는 노동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음. 공중보건 책임자에 필수 서비스 제공을 제외하고 건물 수리, 행정 업무일지라도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요청할 수 없음
<p>노동자 안전보건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와 자가격리 이후의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하며 노동자에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도구들을 제공해야 함. 손씻기를 위한 비누, 따뜻한 물, 손세정제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사업주는 코로나19 관련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서면 및 구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캐나다 국민과 같이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할 시 신고를 해야하며, 자가격리 기간을 위반하는 노동자 역시 포함됨 • 전염병 범유행기간 동안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캐나다 국민들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공중보건 및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며 각 연방의 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처리는 새 조항으로써 기존 법률에 포함됨
<p>사택 및 숙소 제공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자가격리 대상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분리하여 수용해야하며,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호텔 등 대체 숙박시설을 찾아야 함 • 사업주는 자가격리 대상 노동자를 함께 수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욕실, 주방 거실 등 격리 요건을 준수할 수 있으면 공용시설이 허용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숙박시설이 필요함 • 사업주는 사택 및 숙소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며 욕실, 주방 등 공용 구역은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자주 청소하며 소독을 실시함. 필요한 경우 청소전문업체를 활용하며, 사업주는 위생도구(종이타월, 청소 및 소독제품, 비누 등)를 제공해야 함 • 사업주는 욕실 및 세탁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게시해야 함. 욕실 등 공용시설에 포스터 등 외국어로 게시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주는 기저질환 및 노년층들이 자가격리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금해야 함 •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업주는 개인 침실 및 욕실 등 다른 노동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즉시 제공해야 함

영국, 대기오염과 안전보건에 관한 보고서 발표²²⁾



경제활동과 대기오염의 상관관계

- 2019년,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 기록적인 대기오염이 발생하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이 붉어지는 등 대기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됨
- 보건영향연구소²³⁾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30년까지 170만 명, 2050년까지 최대 360만 명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
- 인간은 경제활동을 통해 대기오염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대기오염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오염은 야외 근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치명적일 수 있음

영국안전협회²⁴⁾, 대기오염에서의 야외근로 노동자 보고서 발표²⁵⁾

- 영국안전협회는 런던의 야외근로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²⁶⁾)의 권장치만큼 노출 기준에 대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 영국은 EU 표준을 따르며, EU 표준의 경우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노출치 기준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치 수준에 미치지 못함. 노동자 건강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만큼의 강한 규제가 필요함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폐암 사망 원인의 29%, 만성 폐쇄성 폐질환 43%, 뇌졸중의 24%가 대기오염인 만큼 이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야외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고려한 대처가 요구됨

영국 시간당 평균 오염물 노출치

오염물(ug/m3)	작업환경측정치 (영국)	일반 측정 기준 (영국)	WHO 권고치	EU 표준안
이산화질소	31.5	43.5	40	40
초미세먼지(PM 2.5)	12.6	13.8	10	25
미세먼지(PM10)	23.3	25.9	20	40
오존	48.2	43.2	-	-

(2019년 3월, 9월 기준, 출처: 영국안전협회)

22) <https://www.personneltoday.com/hr/air-pollution-occupational-health-issue>

23) Health Effects Institute

24) BSC, British Safety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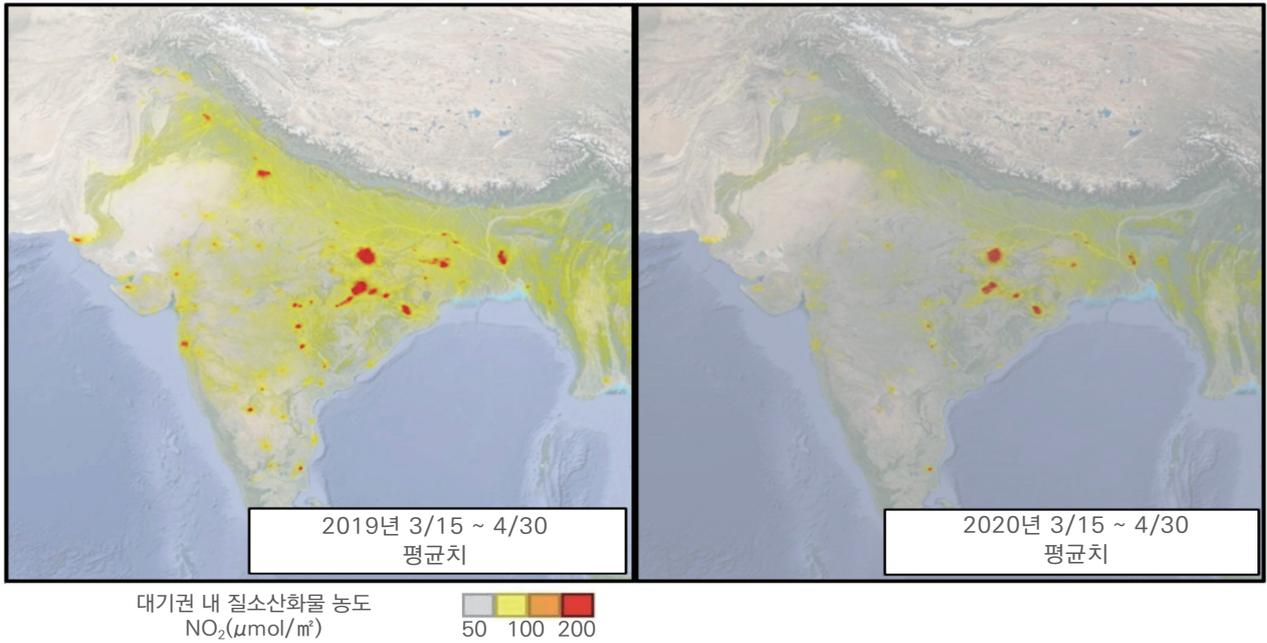
25) <https://www.britsafe.org/campaigns-policy/time-to-breathe-air-pollution-campaign/research-the-case-for-action/>

26) World Health Organization

대기오염 감소와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 필요

- 2020년 코로나19 범세계적 유행으로 전세계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 또한 일시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인도의 경우 봉쇄령이 내려진 뒤 2020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의 평균치가 2019년 동기대비 확연히 낮아짐이 관측됨²⁷⁾

인도 질소산화물 농도 평균치 변화



- 따라서 경제활동은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함

안전보건적 측면



- 대기측정치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대기오염 파악 필요
-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대기오염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제공, 기저질환자 선별
-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방진마스크를 지급·착용하며 미세먼지 영향을 적게 받는 장소에서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조치
- 중량물을 옮기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일 경우 일정을 조정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측면²⁸⁾



- 대기오염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기질 개선 노력
- 석유 및 가스로 인한 메탄 및 탄소 배출 최소화
- 중장비 차량을 비롯한 운송수단 배기가스 감소
- 석탄 및 목재를 소비하는 점토벽돌 대체재 활용 등



27) <https://blogs.worldbank.org/endpovertyinsouthasia/covid-19-time-rebuild-stronger-greener-south-asia>

28)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new-wave-air-pollution-crises-what-can-be-done>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Tel. 052-7030-745

Fax. 052-7030-326

E-mail. overseas@kosha.or.kr

Web(Kr). www.kosha.or.kr

Web(En). <https://www.kosha.or.kr/english/index.do>

※ 본 자료 및 출처(URL포함)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국제 안전보건 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